

부산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단303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다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2019. 9.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8. 31. C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47351 양수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3,265,982원 및 그중 3,994,000원에 대한 202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1.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피고, C이 있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9. 2.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에 C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 1/3 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C의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 2) 피고는 C이 무자력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E, C은 2019. 9. 2.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27. 제기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의 상속지분 1/3에 관하여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피고가 C에게 C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C의 형제이고 C이 의료보험을 체납하여 2019년 초경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을 C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이 2014년경부터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채무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의료보험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채무 상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등기 업무를 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가 C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되는 등기 업무를 진행한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C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C의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심우승

[별지]

부동산 목록

부산광역시 남구 대 12.9㎡ 끝.

